

# 부패취약시기 청렴위반주의보 발령

발령기간: 2023. 2. 20.(월) ~ 3. 10.(금) [신학기 전후 2주간]

발령대상: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전 기관 및 학교

- **신학기, 인사이동 명목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, 선물 등 수수 금지**  
(☞ 금지 금품 제공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았을 경우,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)
- **공직기강 해이, 직장분위기 저해 행위 금지**  
(☞ 복무·보안 규정 준수 철저, 초과근무 부정수급 금지, 성희롱·갑질 등 직장 괴롭힘 금지)
- **업무처리 지연·해태 등 소극행정 금지**  
(☞ 적극행정 운영규정 준수)
- **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 금지**  
(☞ 2023. 4. 5. 실시하는 울산광역시교육감보궐선거 관여행위 금지)





국민권익위원회



졸업식·신학기

학교에서 알아야 할  
청탁금지법  
Q&A



## 적용대상

**Q.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(구성원)인 학부모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? ○**

**A. 초·중등교육법령 또는 학교폭력예방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학부모위원(구성원)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.**

\* 공무수행사인은 '공무수행에 관하여'만 청탁금지법(부정청탁, 금품등 수수 금지)이 적용

**Q. 방과 후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? ○**

**A. 방과 후 교사는 교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.**

\* 반면, 기간제교사는 교원('교육공무원법' 및 '사립학교법')으로 적용대상에 해당

선생님에게  
제공되는 선물

Q. 학생이 담임선생님께  
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드려서는 안된다? O

A. 학생에 대한 평가·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 
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 
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.

Q.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 
교장, 교감선생님께  
5만원 상당의 선물은 해도 된다? X

A. 학생들의 성적, 수행평가,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 
관장하는 교장, 교감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간에는  
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,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 
허용되기 어렵습니다.

선생님에게  
제공되는 선물

Q. 학부모가 자녀의 **작년 담임선생님께**  
**감사의 선물을 드릴 수 없다? X**

A. 현재 담임교사, 교과담당교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 
사교·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 
(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)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.

Q. **졸업식 날 학생들이 담임선생님께**  
**꽃다발을 드려서는 안된다? X**

A. 성적평가 등 학사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졸업식 날 이후에는  
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 
5만원을 초과(100만원 이하)한 선물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.

선생님에게  
제공되는 선물

Q. 첫째 아이가 졸업하는데 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첫째 아이의 담임선생님께 졸업식 날 선물을 드려도 된다? O

A. 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라면 해당 학부모와 교사간에는 통상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나, 사교·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(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)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.

다만, 첫째아이의 담임교사가 동생에 대한 평가·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나 교과목 담당교사인 경우에는 사교·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.



